

제 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83호로 2016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3조)

-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사항 변경(안 제5조제5항)
 - 연임할 수 있다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시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사항 변경(안 제9조제3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 10분의 2 이하
- 바.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담당주사(팀장) 명칭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설치),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제17조(수수료), 제20조(과태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9. 29. ~ 10. 19.)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기금운영심의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1)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사항 및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지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며, 간사 및 회계공무원의 행정직위 명칭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정비함.
- 이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기금의 특수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지출금액을 10분의 5 이하에서를
10분의 2 이하로 조정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③ 국가등은 자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1.3.29.]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1.3.29.>]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전문개정 2011.3.29.]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11.3.29.]